

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

의안 번호	331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8월 28일

발 의 자 : 정혜영 의원

1. 제안이유

하남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정책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하는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평가 결과를 조례 정비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입법영향평가 실시, 대상 및 방법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임기(안 제5조)
- 라. 위원회 기능, 운영 및 위원 해촉(안 제6조~8조)
- 마. 자료 요구, 결과 공개 및 활용 등(안 제9조~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- 라. 기타사항 : 덧붙임

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남시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및 정책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하는 입법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입법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입법영향평가”란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, 정책 효과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·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) ① 하남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시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날부터 4년이 경과하였거나,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.

③ 제2항의 입법영향평가 대상 조례 중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와 기관설치, 인사운영, 업무분장, 문서관리 등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제외한다.

제4조(입법영향평가 방법 등) ① 입법영향평가의 세부 기준, 절차 및 방

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5조(입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1. 하남시의회 의원

2. 하남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

3. 변호사, 교수,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

4.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법영향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

2.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

3.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입법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 또는 전문위원이 된다.

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
2.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료 요구 등)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,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결과의 공개 및 활용)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

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

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시장 및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경기도 내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

(2026. 2. 26. 현재)

연번	자치단체명	법 규 명	제·개정 일	소관부서	비고
1	경기도	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	2020-12-31	의회사무처 법제과	
2	동두천시	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	2025-03-14	기획감사 담당관	
3	오산시	오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	2024-09-25	기획예산 담당관	
4	시흥시	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	2023-06-29	의회사무국	
5	파주시	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	2020-09-25	예산법무과	
6	부천시	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	2020-07-13	예산법무과	